

[별표 4] <개정 2002.8.8, 2003.12.3, 2004.6.29>

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

(제35조제1항제3호관련)

1.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대상사업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으로서 그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
2.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대상사업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으로서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
3. 별표 1 제1호 다목(3)(나)·(다), 다목(4)(나)·(다)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